

1.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서비스제공자와 이용어르신(신원인수인(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장기요양급여이용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의 내용을 명확히 한다.

- 1.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장기요양인정 만료일까지로 한다. 이용어르신의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이 있을 경우 재계약을 체결한다.
- 2.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이하 “등외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 3. 계약 목적은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어르신과 서비스 제공기관 간의 서비스 제공 내용 및 제반 의무사항을 명확히 정하기 위함에 있다.
- 4.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이 한다.
 - ① 장기요양등급 이용어르신은 장기요양재가급여한도액 이내로 이용하여야 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전액 본인 부담으로 한다.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2025년	230만6400	208만3400	148만5700	137만0600	117만7000	65만7400

- ② 등급별 및 이용시간별 차등하여 장기요양급여가 정하여져 있고,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은 이용어르신의 본인부담금 비율에 따라 정해진다. 급여비용은 오후 6시 이후 이용시간에 대해서는 20% 가산하고, 휴일 이용시간에 대해서는 30% 가산한다.

이용시간 및 등급		'25년수가	일반	감경40%	감경60%
			본인부담(15%)	본인부담(9%)	본인부담(6%)
3시간	1등급	40,650	6,098	3,659	2,439
	2등급	37,630	5,645	3,387	2,258
	3등급	34,740	5,211	3,127	2,084
	4등급	33,160	4,974	2,984	1,990
	5등급	31,580	4,737	2,842	1,895
	인지지원	31,580	4,737	2,842	1,895
6시간	1등급	54,490	8,174	4,904	3,269
	2등급	50,470	7,571	4,542	3,028
	3등급	46,590	6,989	4,193	2,795
	4등급	45,000	6,750	4,050	2,700
	5등급	43,400	6,510	3,906	2,604
	인지지원	43,400	6,510	3,906	2,604
8시간	1등급	67,770	10,166	6,099	4,066
	2등급	62,780	9,417	5,650	3,767
	3등급	57,960	8,694	5,216	3,478
	4등급	56,380	8,457	5,074	3,383
	5등급	54,780	8,217	4,930	3,287
	인지지원	54,780	8,217	4,930	3,287
10시간	1등급	74,660	11,199	6,719	4,480
	2등급	69,160	10,374	6,224	4,150
	3등급	63,900	9,585	5,751	3,834
	4등급	62,290	9,344	5,606	3,737
	5등급	60,710	9,107	5,464	3,643
	인지지원	54,780	8,217	4,930	3,287
13시간 초과	1등급	80,060	12,009	7,205	4,804
	2등급	74,170	11,126	6,675	4,450

	3등급	68,520	10,278	6,167	4,111
	4등급	66,930	10,040	6,024	4,016
	5등급	65,350	9,803	5,882	3,921
	인지지원	54,780	8,217	4,930	3,287

③ 그 외의 비용인 식사비, 간식비와 기타 실비는 전액 본인 부담으로 한다.

비급여 항목		기타 비급여 청구 항목
식사비	1식 3,800원	1. 어르신 개인 의료비 (병원진료, 약제비, 의료용품 등) 2. 어르신 개인 용도의 물품구입 (본인 또는 보호자의 요청)
간식비	1일 1,000원(2회)	

5. 서비스제공자의 의무와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는 아래와 같이 한다.

①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 안전한 기관생활여건을 조성하여 안전하게 장기요양급여 주간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
- 이용어르신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할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 체결된 계약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서비스를 성실하게 제공할 의무

② 신원인수인(보호자)의 의무

- 어르신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에 대한 협조 의무
- 어르신의 월 이용료 등 이용비용 부담의 의무
- 어르신 및 보호자의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③ 신원인수인(보호자)의 권리

- 이용어르신과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해 알 권리
- 이용어르신이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
- 이용어르신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권리
- 이용어르신이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 시 시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6.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①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 ② 서비스 제공자가 주야간보호 급여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③ 서비스 제공자가 급여제공시간을 이용어르신이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변경한 경우
- ④ 이용어르신이 사망한 경우
- ⑤ 이용어르신의 등급이 변경 된 경우
- ⑥ 이용어르신이 건강검진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써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되는 경우
- ⑦ 어르신이 배회 또는 폭력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로 다른 어르신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
- ⑧ 어르신이 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주는 경우
- ⑨ 어르신이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기관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않을 경우
- ⑩ 어르신 혹은 보호자가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